

의안번호	2211430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11.28.
추 계 번호	25B373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69억원, 2031년 183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881억원(연평균 176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선유지비의 지급 (안 제8조)	169	173	176	180	183	881	176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지급단가의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과 가구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2항 ¹⁾ 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제1호)	의무규정
2	안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3항) 3의2.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주택노후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 등 수선유지의 결과. 다만,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이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조 (정의)	○	• (추계) 연구자료와 기존 유사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	
3	안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 (미대상)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능 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선유지비 지급

1)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기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선
유지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라 수선유지비에 포함될 고효율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범위와 설치·개량·보수 비용, 지급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수선유지비 지급단가 변화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수선유지급여
지급방식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과 단가 인상분을 추정함

□ 본 추계에서 참고한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사사례 1) 서울특별시 「새빛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단열창호,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
 - 지원비율: (일반가구) 순공사비의 70% 이내, (저소득층) 순공사비의 90% 지원
 - 지원한도: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
- (유사사례 2) 산업통상부, 「그린홈 패키지사업」
 - 지원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
 - 지원내용: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
냉·난방 효율개선 및 LED 보급 등 지원
- (유사사례 3) 산업통상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고효율 단열시공, 창호·바
닥공사, 고효율 보일러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
선)
 - 지원금액: (난방) 가구당 243만원, 시설 1,100만원 / (냉방) 가구 72만원, 시설
360만원
- (유사사례 4)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 지원내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노후 보일러를 가
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60만원(대당)**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²⁾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에 대하여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으로, 연도별 지원대상에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지원가구)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소득·주택 노후도·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근 5년간 수선유지급여³⁾ 지원실적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2만 가구 내외 수준임

[표 2]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현황: 2020~2024년

(단위: 가구)					
가구수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18,519	18,801	19,607	19,027	20,350
경보수	7,842	10,084	11,915	11,779	11,632
중보수	3,695	4,248	4,317	4,674	5,581
대보수	6,982	4,469	3,375	2,574	3,13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해서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중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별해야 하나, 개별 가구의 구체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 서울시 등의 노후주택 관련 유사 지원사업 사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건축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9.)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2.0	2.0	2.0	2.0	2.0

3)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가정함

- 이에 따라 추세가 일정한 최근 3년간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평균 실적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2024) 「주택총조사」에 따른 건축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 비중(65.4%)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수를 추정함

[표 3] 고효율 건축설비 설치 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전망: 2027~2031년
(단위: 가구)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경보수	7,701	7,701	7,701	7,701	7,701	38,505
중보수	3,177	3,177	3,177	3,177	3,177	15,885
대보수	1,981	1,981	1,981	1,981	1,981	9,905

□ (단가) 개정안에 따라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수선유지급여 단가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단가 인상분을 추정함

- 개정안에 따라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수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현행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식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경보수 60만원, 중보수 180만원, 대보수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중보수 단가는 경보수·대보수 단가인상분의 중간값으로 산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4] 고효율 건축설비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단가인상분 전망: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경보수	0.6	0.6	0.6	0.7	0.7
중보수	1.9	1.9	1.9	2.0	2.0
대보수	3.1	3.2	3.2	3.3	3.4

- 현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소득기준에 따라 80~100%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별 소득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 단가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음

[표 5]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내부 시설 일부 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옥실 및 주방 개량

주: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가구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80%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가구,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가구수	경보수	7,701	7,701	7,701	7,701	7,701	38,505
	중보수	3,177	3,177	3,177	3,177	3,177	15,885
	대보수	1,981	1,981	1,981	1,981	1,981	9,905
단가	경보수	0.6	0.6	0.6	0.7	0.7	-
	중보수	1.9	1.9	1.9	2.0	2.0	-
	대보수	3.1	3.2	3.2	3.3	3.4	-
소계	경보수	4,803	4,899	4,997	5,097	5,198	24,993
	중보수	5,944	6,063	6,184	6,308	6,434	30,932
	대보수	6,177	6,301	6,427	6,555	6,686	32,146
합계		16,923	17,262	17,607	17,959	18,318	88,070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지급단가의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과 가구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지급단가의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과 가구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